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 년 2 월 17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신한 BNP 파리바자산운용(주)  
(영문명)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shbnppam.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8, 19 층  
(전 화) 02-767-5777

대 표 이 사 : 최방길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  
(성 명) 장덕진 (전 화) 02-767-5720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이영규 (전 화) 02-767-9080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 같은 항 제 2 호다목,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59 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8 호)

###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2012 가합 1932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김형신 외 1명
3. 청구내용	공동피고 前직원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당사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함 (1.8억)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예정
6. 제기.신청일자	2012년 2월 07일
7. 확인일자	2012년 2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